

	환경경영시스템	문서번호	HW-EI-830
		개정일자	2023.08.01
	오수관리 지침서	개정번호	0
		쪽 번호	1 / 5

□ 목 차 □				
1. 적용범위 2. 목 적 3. 관련 법규 4. 용어의 정의 5. 책임과 권한 6. 업무 절차 7. 기록 관리 8. 관련 문서				
0	2023.08.01	ISO14001 인증 추진에 따른 최초 제정		
개정번호	개정일자	개 정 사 유 및 개 정 내 용		
구 분	작 성 자	검 토 자		승 인 자
부서명 / 직책	안전환경관리부 주 임	안전환경관리부 부 장		대 표 이 사
성 명	공 도 현	김 병 후		이 수 대
서 명				
일자(년/월/일)	2023/08/01	2023/08/01		2023/08/01

	환경경영시스템	문서번호	HW-EI-830
		개정일자	2023.08.01
	오수관리 지침서	개정번호	0
		쪽 번호	2 / 5

1. 적용 범위

시공 및 공사관리에 관련된 일련의 활동에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,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목적

이 지침서는 당사의 사업활동상 발생하는 오수 관리에 필요한 정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계된 제반 업무절차 및 책임과 권한에 적용한다.

3. 관련 법규

- 3.1. 하수도법
- 3.2. 하수도법 시행령
- 3.3. 하수도법 시행규칙

4. 용어의 정의

1) 오수

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며,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써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 화장실, 목욕탕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.

2) 분뇨

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(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 중 탈수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.)을 말한다.

3) 오염물질

오수로 인하여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물질을 말한다.

4) 오수처리시설(이하 "처리시설"이라 한다.)

오수를 침전·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.
(단, 단독 정화조는 제외한다.)

5) 단독 정화조(이하 "정화조"라 한다.)

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, 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.

6) 방류수 수질기준

오수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에서 정화 후 방류될 때의 방류수 중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(%), 생화학적산소요구량(mg/l), 부유물 질량(mg/l), 등의 법적 배

	환경경영시스템	문서번호	HW-EI-830
		개정일자	2023.08.01
	오수관리 지침서	개정번호	0
		쪽 번호	3 / 5

출허용 기준을 말한다.

(오수,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다.)

7) 관할행정기관

오수 관리 관련 시설 인허가 및 지도, 점검기관으로 도청, 시청, 환경청 등의 기관을 말한다.

5. 책임과 권한

5.1. 현장소장

- 1) 현장 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대상 검토 결과 승인
- 2) 현장 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에 관한 관할행정기관과의 인허가 업무승인
- 3) 오수 환경 점검표 승인

5.2. 총무(총무 업무 담당자)

- 1) 현장 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 계획
- 2) 현장 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에 관한 관할 행정 기관과의 인허가 서류 작성
- 3) 현장 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운영에 관한 업무
- 4) 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공사 및 설치
- 5) 오수 환경점검표 실행

6. 업무절차

6.1. 일반사항

- 1) 현장소장은 현장에 적용해야 할 환경관리 대상과 범위를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식별해야 한다.
 - (1) 해당되는 공사인 경우 적격심사시 제출한 환경관리계획의 각 환경측면 개선계획
 - (2) 현장 실착공 후 시행된 **환경측면관리프로세스**에 의한 **환경영향평가** 결과
 - (3) **법규관리 및 준수 의무** 규정에 의한 첨부된 환경 법규등록 대장
- 2) 현장소장은 식별된 환경관리 대상측면에 대해 관리계획을 아래와 같이 작성해야한다.
 - (1) 현장 환경관리계획을 “**품질경영·안전보건경영·환경경영 매뉴얼**”의 “**운영관리 규정**”에 의해 작성되는 **환경관리계획서**에 포함
 - (2) 환경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중점관리대상에 대하여 **목표관리** 규정에 의한 환경 목표 추진계획 수립
- 3) 처리시설 또는 정화조
 - (1) 현장 총무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처리시설 또는 정화조가 필요한 경우 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, 현장소장의 검토를 받아 승인을 얻는다.
 - (2) 인허가 업무

	환경경영시스템	문서번호	HW-EI-830
		개정일자	2023.08.01
	오수관리 지침서	개정번호	0
		쪽 번호	4 / 5

-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관리상태, 오니의 적정 제거 여부 및 방류수의 상태 등을 점검한다.
- 1일 처리용량이 2,000m³ 이상인 처리시설 또는 1일 처리 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는 **6개월마다 1회 이상**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 측정하거나 적법한 측정대행자에게 측정하게 하고, 그 결과를 **3년간 보존**한다.
- 처리시설이나 정화조는 **연 1회 이상** 내부 청소를 한다.
- 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오니 및 찌꺼기의 제거 등 내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,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정화조청소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. 이 경우 오니를 탈수하여 처리할 때는 **폐기물 관리 지침서**에 의해 처리한다.
- 1일 처리용량이 100m³ 이상인 오수처리시설 또는 1일 처리 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에 대하여는 염소 등으로 소독을 한다.
- 오배수관이 막히거나 오수가 역류 또는 누수되지 아니하도록 펌프 등 필요한 시설을 한다.

(3) 현장 총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- 정화조의 경우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 외의 오물을 유입시키는 행위
- 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에 빗물 등을 유입시키는 행위
- 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에 살충제·항균제 등 독성물질을 유입시켜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
-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경우 전원을 끄는 행위

(4) 현장 총무는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될 때는 시장, 순수,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- 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개선·변경 또는 보수하는 데 필요한 경우
- 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
- 단전·단수로 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
- 천재지변,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
-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 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

6.2. 환경점검

- 1) 현장소장은 현장의 환경관리 상태가 지속적으로 정상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현장 총무를 선정하여 환경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2) 현장 총무는 **매일 1회 순회점검**을 환경점검표에 따라 실시하고 잘 시행되고 있는 경우 별도 기록은 작성하지 않고 부적합사항 발견시 **지속적개선 규정**에 따라 처리하고 기록한다.
- 3) 발견된 부적합사항이 있는 경우 **지속적개선 규정**에 따라 부적합을 처리하고 관련 조치란에 부적합보고서 번호를 기록한다.
- 4) 우기 혹은 특별한 작업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크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별 점검을 상기절차에 따라 시행하여 점검결과란 중 빈칸에 기록한다.

	환경경영시스템	문서번호	HW-EI-830
		개정일자	2023.08.01
	오수관리 지침서	개정번호	0
		쪽 번호	5 / 5

7. 기록관리

- 7.1. 본 규정과 관련된 기록은 아래와 같이 관리하며 일반관리사항은 **문서화된 정보관리 규정**(HW-QESHP-751)에 따른다.

기록문서	관리부서	양식번호	보존기한
환경 점검표	안전환경관리부	HW-환경-003	3년

8. 관련문서

- 8.1. 목표관리 규정
- 8.2. 환경운영관리 규정
- 8.3. 법규관리 및 준수의무 규정
- 8.4. 환경영향평가 규정
- 8.5. 지속적개선 규정
- 8.6. 품질매뉴얼
- 8.7. 안전보건,환경 매뉴얼